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8
----------	-----

제안년월일 : 2000년 2월 10일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 함.(안 제2조)

나. 여비지급 준용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토록 함. (안 제17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고 제17조제4항중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 ① (생략)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③ (생략) ④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u>국내여비규정</u>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2조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차 정례회</u> ----- ----- ----- ----- -----.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공무원여비규정</u> ----- -----.